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38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자 : 박희승 · 한정애 · 김종민
서영교 · 위성곤 · 정준호
박용갑 · 맹성규 · 박홍배
박상혁 · 김한규 · 한민수
의원(12인)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외환거래규제의 완화 등 자유무역 기조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악용하여 무역거래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투자금을 부당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 무역을 통한 허위매출로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의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장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악용하는 재산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범죄를 방지해야 할 세관의 수사 권한은 직접적인 세수 확보나 국경 보호를 위한 밀수,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및 마

약반입 등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범죄에서 파생되는 무역행위를 교란
· 악용하는 불공정 무역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
법」에 따른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편
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를 통한 자본시장 교란 및 「형법」에 따른 재
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무역행위 교란·악용행위를 방지하여 국민경
제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무역의 경쟁력, 투명성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 및
「형법」에 따른 사기·배임·횡령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
함(안 제6조제14호나목 신설).

나. 세관공무원의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세법」, 「대외무역
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 및 「형법」에 따른 사기·배임·횡령범죄를
추가함(안 제6조제14호라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범죄”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및 제43조(제40조제1호에 따른 범죄로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
-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 및 제40조(제37조제1호에 따른 범죄로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
-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범죄
- 4) 「형법」 제347조, 제352조(제34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제355조 및 제356조의 미수범으

로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가. (생략)	14. ----- ----- 가. (현행과 같음)
<u><신설></u>	<u>나. 가목에 따른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u>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및 제43조(제40조제1호에 따른 범죄로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 및 제40조(제37조제1호에 따른 범죄로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나. (생략) 다.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u>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u>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라. ~ 바. (생략) 15. ~ 50. (생략)	<u>에 따른 범죄</u> 4) 「형법」 제347조, 제352조(제34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제355조 및 제356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라. ----- ----- <u>가목부터 다목</u> <u>까지에 따른 범죄</u>----- ----- ----- ----- 마. ~ 바. (현행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15. ~ 50. (현행과 같음)
---	---